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0-672호

공 시 송 달 공 고

「식품위생법」 제36조(시설기준), 제37조(영업허가 등)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(허가취소 등) 규정에 의거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(영업장 폐쇄) 처분에 앞서 같은 법 제81조(청문) 및 「행정절차법」 제21조(처분의 사전 통지) 규정에 의거 청문내용을 사전통지하였으나 등기우편물 반송(이사감)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(송달)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0. 9. 16.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1. 제　　목: 식품위생업소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사전통지 반송분 공고
2. 공고기간: 2020. 9. 16.(수) ~ 2020. 10. 6.(화)
3. 근거법규: 식품위생법 제36조, 제37조, 제75조
4. 게시장소: 전국 시·군·구 게시판, 홈페이지
5. 직권말소(예정)일: 2020. 10. 7.(수)
6. 직권말소 처분예정업소 내역

업종	업 소 명	영업소 소재지	대표자	처분사유	처분내용
유통전문판매업	삼희에프앤비	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36가길 36-6, 2층	이*상	영업시설물 멸실	영업소 폐쇄

7. 고지사항

2020년 10월 6일까지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. 위 공시송달(공고)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,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(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)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8. 문의사항: 서울특별시 중구보건소 보건위생과 식품안전팀 김소현(☎02-3396-5662)

이 문서는 서울특별시 중구청의 승인없이 수정 할 수 없습니다